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7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 박정현·복기왕·윤건영

전진숙 · 송옥주 · 박범계

정준호 • 주철현 • 박지원

장종태 • 조인철 • 박해철

홍기원 • 황정아 • 민병덕

한병도 · 김 유 · 한창민

오세희 • 이상식 • 이학영

모경종 • 양부남 • 위성곤

강준현 · 조승래 · 이해식

백승아 • 서미화 • 채현일

이광희 • 신정훈 • 박용갑

김현정 • 이재정 • 장철민

최민희 · 김 현 의원

(38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초 발행된이후, 2024년 현재 전국 20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지난 2023년과 202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제대로 된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있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는 한편,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랑상품권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 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			
	• 환전 등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u>한다.</u>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			
	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			
	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u>"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u>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랑상품권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유 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 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기본계획과 시행계 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 <삭 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저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항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u>(5)</u>	행정] 안	전부	장관	<u> </u> 은	Γ	국기	-재
	<u>정</u> 투	법」	제.	31조	-에	11	라 (예신	요.
	<u>구</u> /	너를	7]	획재	정투	<u></u>	관에	게	제
	<u>출</u>	하는	경	우	제4호	항에	따	른	지
	<u>방</u> 기	아치	단체	의	장의	의 .	예산	요	<u>. 청</u>
	<u>내</u>	용을	반약	경하	여이	: ર <u>ૂ</u>	<u>다.</u>		
ᅦ	152	준의2	2(지	역시) 랑	상품	권	0	용
	실터	#조/	(나	1					
		<u>п</u> }	년	실기	시하.	고,	ユ	결괴	-를
	<u>소</u> 된	관 성	}임.	위원	회어]]	보고:	하여	야
	<u></u> 하다	 }							

② (현행과 같음)